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작에 앞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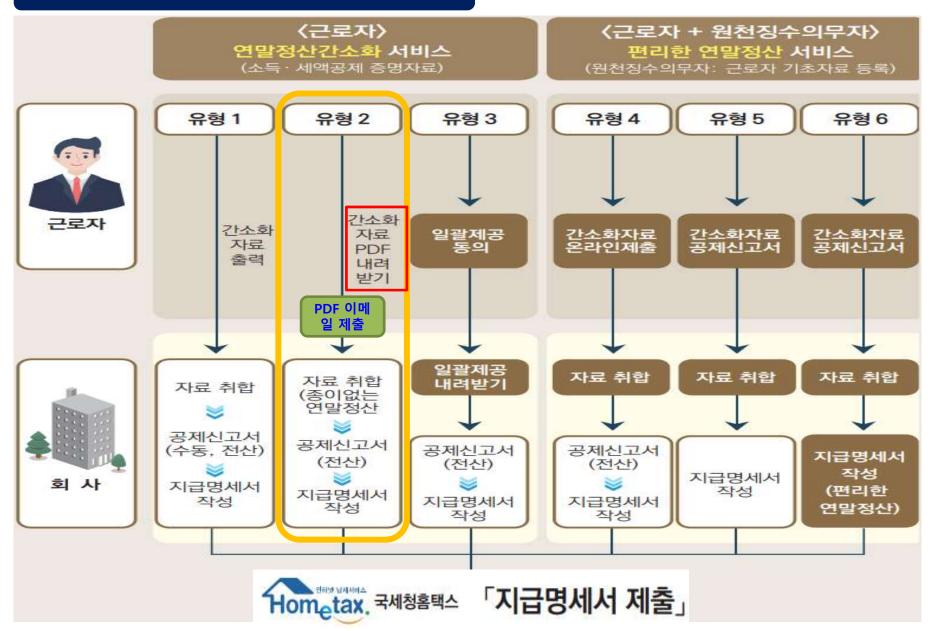


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!

〈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〉

-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
- ☞ 특히, <u>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</u>,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🔁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
- ☞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- 🖪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-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소득·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.
-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
- ☞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☞ 19세 미만(2003.1.1. 이후)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「자녀자료 조회신청」후 조회 가능합니다.
- □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.

우리회사의 연말정산 적용 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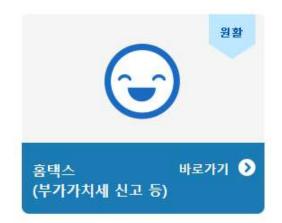
1.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클릭



* 연말정산간소화,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임시 화면입니다.



 연말정산간소화란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, 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.



부가가치세 신고, 사업장현황 신고,
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
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△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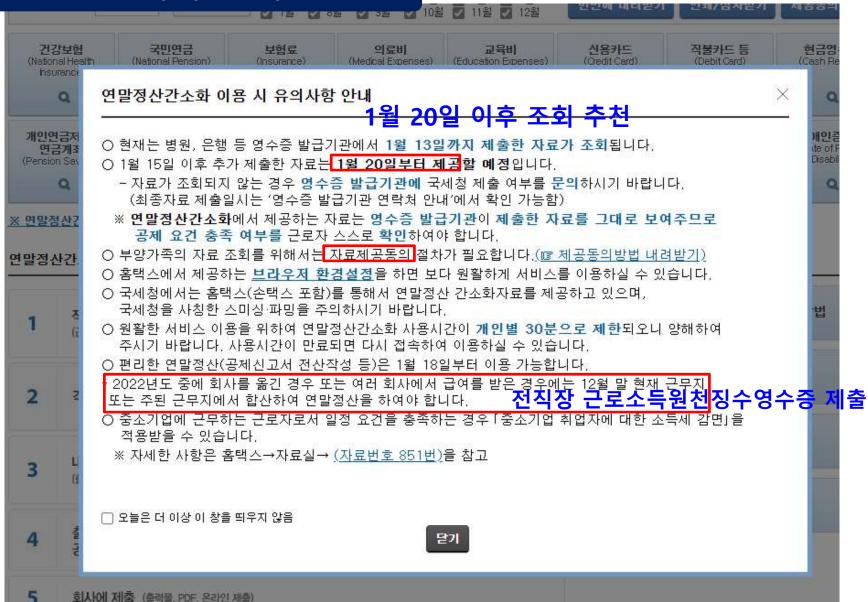
-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집중되는 1.15. ~ 1.27.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.15.(일), 개통일 이후 평일인 1.16.(월)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.20.(금) 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, 1.21.(토)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2.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클릭



공인인증서 등록 및 간편 로그인

3.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



4. 소득·세액공제 내역조회 중 해당자료 선택→내용확인 → 한번에 내려받기

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

중도입사자는 근무월만 선택 (전직장 있을시 전직장 근무월 포함)

일괄제공 🂢 (동의) 🔞 연말정산 챗봇

* 귀속년도 202	22년 ✔ 전체월해	제 <mark>/</mark> 1월 / 25 / 7월 / 8	월 🗸 3월 🗸 4월 월 🗸 9월 🗸 10월	 ✓ 5월 ✓ 6월 ✓ 11월 ✓ 12월 	한번에 내려받기	인쇄/점자받기	제공동의 현황
건강보험 (National Health hsurance)	국민연금 (National Pension)	보험료 (Insurance)	의료비 (Medical Expenses)	교육비 (Education Expenses)	신용카드 (Credit Card)	직불카드 등 (Debit Card)	현금영수증 (Cash Receipt)
Q	Q	H청크	71 H 그 71 T I C		I I LMI	Q	Q
개인연금저축/ 연금계좌	주택자금 (Housing Funds)					기부금 (Donation)	장애인증명서 (Certificate of Person with
(Pension Savings)	Q	Q	Savings)	Venture investment trust)	Small Size Enterprises)	Q	Disability)

※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소득 - 세액공제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확인해야 합니다.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



6 연말정산간소화 도우미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	0
■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	0
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	0
↓ 이것만은 유의하세요	0

5. 간소화자료 내려받기

참고1> PDF를 내려받기 할 때 <mark>[저장]</mark> 또는 <mark>[다른이름으로</mark> - [열기]로 먼저 열람하고 다른이름으로 저장하지 마십 <i>시</i>			
참고2> PDF를 열때 <mark>아크로뱃리더</mark> 를 사용하시고, PDF를 - Adobe Acrobat Reader 다운로드 : <u>Windows용</u> / <u>J</u>	열 수 없는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 <mark>Mac용</mark>		
참고3> <mark>미검증</mark> 표시 [원인] 브라우저(크롬 등)로 연 경우, 아크로뱃리더 이외 [해결] 아래의 진본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십시오. 단, [참 고1]의 방법대로 저장한 PDF파일은 미검증으 로	뷰어를 사용한 경우 등 로 보이더라도 회사에 제출하면 정상적으로 연말정산 가능		
참고4> PDF 파일의 <mark>진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인증서 검증</mark> - 진본확인 프로그램 다운로드 : <u>Windows용</u> / <u>Mac용</u> - 아크로뱃리더를 <mark>먼저</mark> 설치한 후 진본확인 프로그램을			
간소화 자료 조회 화면에서 각 공제 항목	을 클릭해야 아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.		
☑ 건강보험	☑ 현금영수증		
☑ 국민연금	□ 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		
☑ 보험료	<u></u> 주택자금/월세액		
☑ 의료비	주택마련저축		
□ 교육비/직업훈련비/교복구입비/학자금대출	장기집합투자증권/벤처기업투자신탁		
□ 신용카드	□ 소기업/소상공인 공제부금		
☑ 직불카드 등	□ 기부금		
□ 문서열기암호(비밀번호)설정			
 개인정보가 공개된 출력물의 보관 책임은 이용자에게 			
 ▼ 보험료의 피보험자 주민번호와 정치자금기부금 정보 			

<Check Point>

*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공제 가능 (전직장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시 근로기간에 해당) EX) 전직장에서2022.01.01~2022.02.15근무, 현직장에서2022.07.01~2022.12.31 근무 →근로제공기간: 1월~2월, 7~12월(3월~6월 공제 안됨)

※특별소득공제항목 중 <u>보험료, 주택자금, 신용카드,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, 우리사주</u> <u>조합출연금,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공제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**근로제공기** <u>간만 소득공제가능</u></u>

단, 기부금, 개인연금저축, 투자조합등공제,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공제는 해당연 도에 지출한 금액도 공제가능함.

위 항목은 근로제공기간 해당월만 선택 후 조회하여 제출해야 함.